



★ 2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교육부</p>	<h1>보도자료</h1>
 <p>법무부</p>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법무부 대변인실 ☎ 02-2110-3009

[자료문의] ☎ 044-203-6499 교육부 대학평가과장 박대림, 사무관 최근승
☎ 02-2110-4067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영근, 사무관 장희정

‘14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 확정 -

교육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인증위원회 : 교육부법무부민간위원 등 15인 내외 구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된 이래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할 지원을 통해 우수 지한(知韓)·친한(親韓)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유학생(누적) 불법체류자수(법무부) : ('13) 7,546명 → ('14) 6,779명, 전년대비 10.2% 감소

○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신청 대상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원격대학 제외) '14년부터는 대학원대학 까지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거쳐 '14년 신규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를 선정하였다.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별첨 1]

**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대학으로 법무부에 통보되어 비자발급 심사업무에 참고

2014년도 신규 인증대학과 기존 인증 유지대학 46개교를 합치면 유학생 인증대학은 총 83개교가 되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14년 신규 인증 대학	2012~2013 기존 인증 유지대학
4년제 (69)	가천대, 경북대, 대진대, 동의대, 부경대, 배재대, 세명대, 송실대, 신라대, 인제대, 전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호서대, 목원대, 한국해양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김천대, 단국대, 동서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한동대 (28개교)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충주),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41개교)
전문대 (11)	경북전문대, 구미대, 부천대, 선린대, 서울예대, 한국영상대 (6개교)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5개교)
대학원 대학 (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3교)	-
총 83개교	37개교	46개교

○ 인증 유효기간은 총 3년*('15.3월~)이며,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등 절대지표** 기준 값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 '14년 처음 도입 된 대학원대학은 시범실시로 인증기간 1년임

** ①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③ 재정건전성, ④ 언어능력, ⑤ 의료보험가입률, ⑥ 기숙사제공률 (총 6개 지표)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단, '14년 시범도입 된 대학원대학은 제외)

- 인증 제도가 대외적으로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 허가 시간 연장(주중 20시간 → 25시간) 혜택을 받게 된다.

*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또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각종 박람회(유학박람회 및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GKS*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되고,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게 된다.

* GKS(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한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실태를 점검하였다.

-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 5개 절대지표*(전문대 및 대학원대학 4개 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관리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 ①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전문대 및 대학원 제외), ③ 재정건전성, ④ 언어능력, ⑤ 의료보험 가입률 (총 5개 지표)

-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 대학을 선정하였다.

※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결과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 2014년도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총 4개교로 아래와 같다.

구분	4년제(2)	전문대(2)	대학원대학
비자발급제한 (4)	한세대, 경남과학기술대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	-


- 해당 대학들은 '15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비자발급 제한은 신입입 학부생 및 어학연수생에 한하며, 교환학생, 이미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2014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 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되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며, 관리가 부실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된다.

○ 교육부는 '15년부터 대학의 개선요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안을 통해 실제 대학의 국제화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끝.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평가과 최근승 사무관(☎ 044-203-6499) 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장희정 사무관(☎ 044-203-6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1- 1.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평가 개요

□ 인증 신청자격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 대학 및 유학생 수가 일정 수(4년제 20명, 전문대 및 대학원대학 10명) 미만인 대학

□ (1단계) 정량지표, 상대평가

- 정량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3단계 평가 진행

* 국제화기반지표 3개 (4년제 10점 / 전문대 5점) :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비율 ② 해외 파견학생 수 비율 ③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비율(전문대는 제외)

* 유치관리역량 지표 5개 (4년제 90점 / 전문대 95점) : 대학원대학의 경우 국제화지표 제외

④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수 비율 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⑥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⑦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⑧ 신입생 유학생 숙소 제공률

□ (2단계) 절대지표 : 정량지표, 절대평가

- 6개 절대지표를 제시하되, 4년제, 전문대, 대학원대학의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6% 미만	6% 미만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 미만	1% 미만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제외)	(대학원대학 특성을 고려해 제외)
③ 재정건전성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④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⑤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25% 이상	25% 이상	(대학원대학 특성을 고려해 제외)
⑥ 언어능력(한국어/영어능력)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총족 요건	①번-⑥번중5개이상	①번-⑥번중4개이상	①번포함 3개이상

- (자체평가보고서, 정성적 평가)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대학별 특이사항을 소명

- 정성적 평가 결과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절대지표에 따라 인증대학으로 선정

□ (3단계) 현장 평가 : 정성적 평가

- 1, 2단계에서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현장실태를 조사

1-2.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조사 개요

□ 기본 방향

- 국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발절차, 생활·학업관리 및 적응지원 등을 적용 및 제공하는지 조사
- 5개 절대지표(전문대 및 대학원대학은 4개) 및 정성평가를 통해 유치 관리가 현저히 부실한 대학은 하위대학으로 판정

□ 하위대학 후보군 선별

- (4년제 대학) 기본적 절대지표 또는 4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 후보군으로 분류
 - (전문대) 기본적 절대지표 또는 3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 후보군으로 분류
 - (대학원대학) 기본적 절대지표 또는 3개 지표 중 3개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 후보군으로 분류
-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은 기본적 절대지표로서, 동 지표가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하위대학 후보군

<표 >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하위대학(비자제한 후보군) 기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기본적 절대 지표	① 중도탈락률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5% 이상	-	-
	③ 재정건전성	60% 미만	60% 미만	60% 미만
	④ 의료보험 가입률	60% 미만	60% 미만	60% 미만
	⑤ 언어능력(한국어/영어능력)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해당 요건		①번 또는 ①-1번 해당 ②번~⑤번 중 3개(4년제, 대학원대학), 2개이상(전문대)		또는

□ 하위대학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장 정성평가 실시, 최종 판정

- 정량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량자료로는 파악이 어려운 정성적 사항(개선가능성, 유학생 만족도 등) 평가